

#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사업비 정산가이드

# 【 목 차 】

I.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03
II. 정산 일반사항 .....	03
III. 수행절차 안내 .....	04
IV. 유의사항 .....	06
V. 수출기업육성 정산지침 .....	07
1. 해외영업지원 .....	9
2. 수출 컨설팅 .....	10
3. 홍보/광고 .....	11
4. 제품 현지화 .....	12
5. 국제 운송 .....	12
6. 해외 인허가 취득 .....	13
7.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14
8. 무역보험·보증 .....	15
9. 등록비/대행비 .....	16
10. 통번역 .....	17
11. 시장조사 지원 .....	18
12. 디자인 개발 .....	19
13. 테스트비 .....	19
14. 역량강화 교육 .....	20
VI. 해외 개별박람회 정산지침 .....	21
[별첨 1] 실사 및 시장조사 지원 한도 .....	22
[별첨 2] 지급수수료 기준표 .....	24
[별첨 3] 디자인개발 단가 기준표 .....	27

#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사업비 정산가이드

## I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활용 목적) 본 가이드는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참여기업의 사업비 정산을 위한 최종 정산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운영기관”이란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집행·관리등의 업무를 총괄 전담 수행기관을 말한다.
  - 나. “참여기업”이란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 다. “검증기관”이란 “참여기업”에 회계 정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라. “운영지침”이란 사업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말한다.
  - 마. “협약연도”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간 체결한 사업협약 체결 연도의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마지막 일까지로 한다.
  - 바. 본 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정산 요청일 협약연도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3. (적용범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의 내역사업 중 ①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과 ②해외 개별박람회 지원사업의 정산 항목에 한하여 본 가이드를 참조하여 정산한다.

### <수출기업육성 정산 항목>

구 분	세부 내용
해외영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li> <li>▪ 세부내용 : 제품 홍보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료, 부스 설치비 및 추가장치비, 주최측 공식 마케팅 서비스 등</li> </ul>
수출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전략 수집을 비롯한 수출 확대를 위한 경영 전반, 교육 등의 컨설팅 지원</li> <li>▪ 세부내용 : 시장조사, 내·외부 환경 산업분석, 경쟁사 제품 분석 등</li> </ul>
홍보/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서비스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부내용</b> : 신문·잡지 홍보, SNS·검색엔진 마케팅, 홍보 판촉물 제작 및 디자인 비용 등</li> </ul>
<b>제품 현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제품의 디자인 및 특성을 현지의 생산 및 소비 여건에 맞춰 개발하는 비용 지원</li> <li>▪ <b>세부내용</b> : 현지화를 위한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비용 등</li> </ul>
<b>국제 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li> <li>▪ <b>세부내용</b>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등</li> </ul>
<b>해외 인허가 취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비용 지원</li> <li>▪ <b>세부내용</b> : 제품 시험비, 심사비, 등록비, 개선보완비 등</li> </ul>
<b>법무·세무·회계 컨설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해외 진출을 위한 법무, 세무, 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li> <li>▪ <b>세부내용</b> :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 자문, 무역/FTA 자문, 통관 자문, 해외법인 설립/운영 자문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 지원 등의 컨설팅 서비스</li> </ul>
<b>무역보험·보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관련 위험 대응 지원</li> <li>▪ <b>세부내용</b>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한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 신용보증(선적전), 국외기업 신용조사 등</li> </ul>
<b>등록비/대행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 지원</li> <li>▪ <b>세부내용</b> :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대행비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서류 대행 등</li> </ul>
<b>통번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li> <li>▪ <b>세부내용</b> : 계약/법률 문서, 홈페이지 번역, 해외영업을 위한 통역비 지원 등</li> </ul>
<b>시장조사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해외 진출을 위한 경비 지원</li> <li>▪ <b>세부내용</b> : 항공비, 숙박비, 필수 부대비용(보험, 비자)</li> </ul>
<b>디자인 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 개발 지원</li> <li>▪ <b>세부내용</b>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등</li> </ul>
<b>테스트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수출을 위해 해외 시장에서 소요되는 테스트 및 시운전비 등</li> <li>▪ <b>세부내용</b> : 현지 시운전 등 제품테스트·관리 비용</li> </ul>
<b>역량 강화교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의</b>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li> <li>▪ <b>세부내용</b> : 무역실무, 글로벌 마케터 양성,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 강화,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인력 육성 등</li> </ul>

### <해외 개별박람회 정산 항목>

<b>지원 항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프라인 해외 박람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오프라인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li> <li>- 등록비, 주최측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 필요 비용</li> <li>- 전시물품 관련 운송·통관비</li> <li>- 보험료(안전, 상해 등) / 20만원 이내</li> <li>-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 (별첨 2) 국가별 지급수수료 참고</li> </ul> </li> <li>▪ <b>온라인 해외 박람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참가등록비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 비용</li> </ul> </li> </ul>
--------------	--

## Ⅱ 정산 일반사항 안내

### 1. 일반사항

- 가.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선정한 정산 마감일까지 정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참여기업”은 정산가이드에 명시된 [V.정산 지침](인정·불인정 항목 및 유의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며 지출 및 결과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
- 다. 사업비 정산은 협약연도 내에 집행된 사업비에 한한다. 다만, 사전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비(박람회 및 전시회 등록비용 등)를 협약 연도 전년에 집행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 후 정산 신청할 수 있다.
- 라. “운영기관”과 “검증기관”은 “참여기업”의 정산 요청에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마.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검증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운영기관”과 “검증기관”은 3회까지 정산요청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등록액이 불인정 된다.
- 사. 해외 개별박람회 참여기업 경우 박람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업비 집행항목 인정범위 및 변경

- 가. 사업비 집행항목의 인정 범위는 운영지침과 본 정산가이드를 기준으로 한다.
- 나. 증빙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명시된 항목 이외에 운영 및 검증기관이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다. 사업비 집행항목이 다음 각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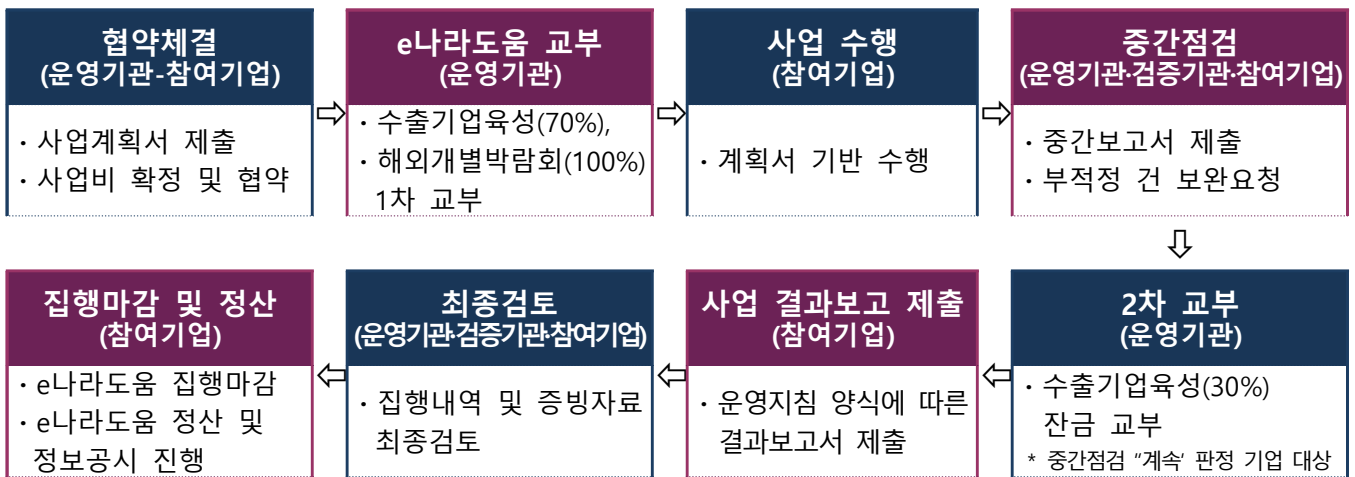
- ① 인증 명칭 및 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② 수출대상국 및 수출 품목 등의 집행항목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③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④ 협약기간의 연장
- ⑤ 기타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참여기업”이 사업협약(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지침 별첨 6) 협약변경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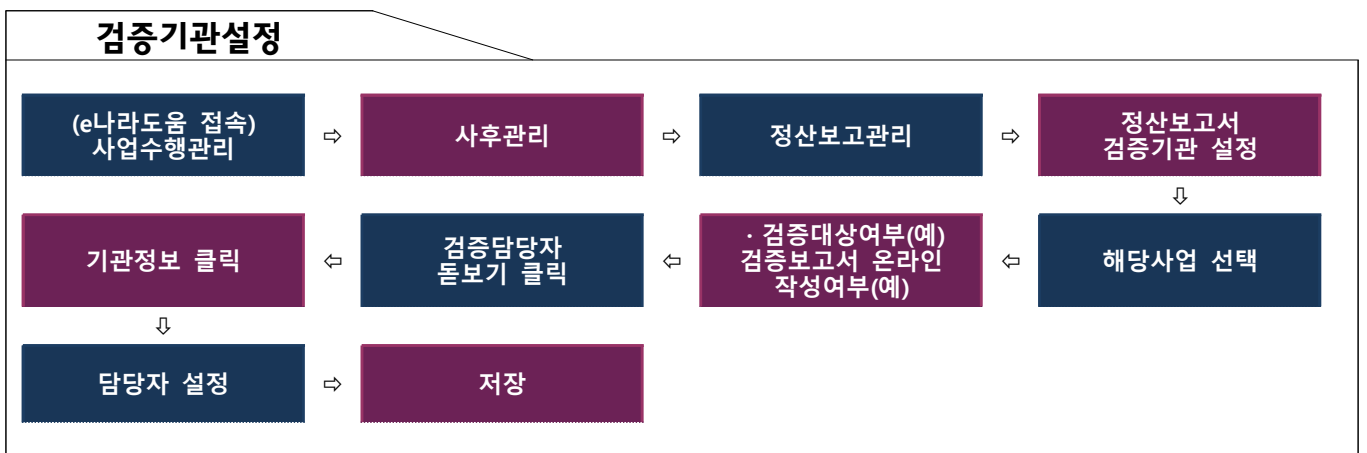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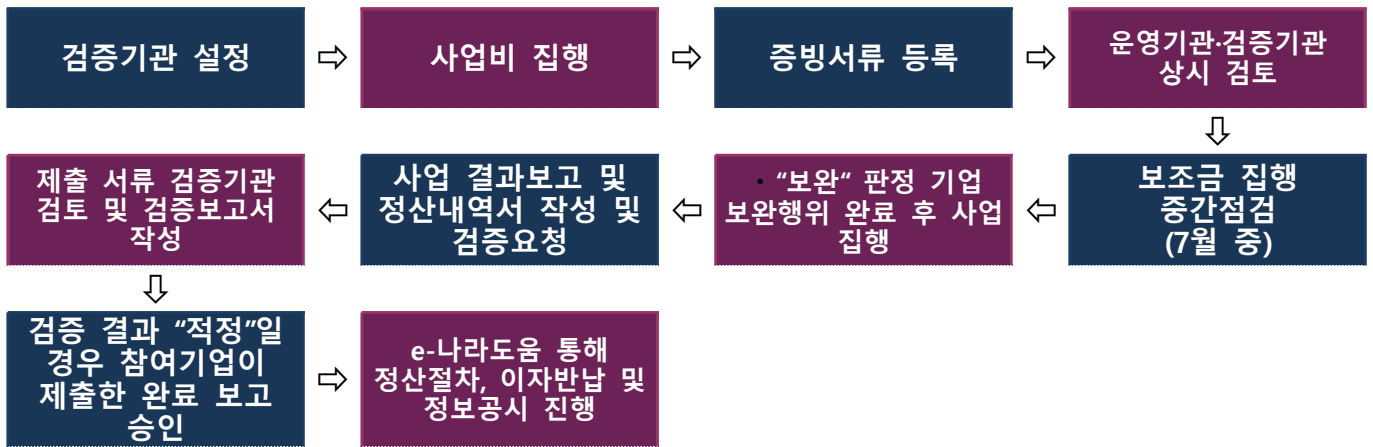
마. 해외 인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당해연도에 종료 불가능한 경우 협약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최초 협약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로 한다. 협약 연장 신청의 가능 시점은 중간점검 종료 이후 1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 Ⅲ 수행절차 안내

#### 1. 사업수행 프로세스



## 2. 집행 및 정산 절차



※ 2025년 검증기관은 추후 별도 안내

## 3. 수행 관련

- 모든 절차는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한다.
- 사업비는 (별첨) 「수출기업육성 수행기관 리스트」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특성상 별도 기관을 통해 운영해야만 할 경우 公社와 협의 후 집행 가능하다.
- 사업비를 선으로 집행해야 할 경우 지출 자료를 우선 증빙하며 결과보고서는 추후 증빙한다.

## IV 유의사항

가. “참여기업”이 본 사업으로 타 기관의 예산을 중복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업비 정산이 불가하다.

\* 타 기관(지자체 등) 유사 지원사업으로 A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을 경우, 본사업(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으로 A박람회의 모든 항목 정산불가

나. 사업비는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 예) 종합박람회 사업의 경우 지원하지 않는 항공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기업이 납부해야 할 임차비(국고 70%, 자부담 30%)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다. 사업비 정산 이후에도 중복 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참여기업”은 사업비 정산 및 중복 지원 등의 문제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업”의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송금 또는 카드결제(일시불)가 원칙으로 현찰 거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 인증기관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세부 계좌정보(예금주, 예금주 주소, 스위프트 코드,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주소, 수취통화 등)가 명기된 송장(인보이스) 및 해당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 정산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중 하나에 따른다.

①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②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털의 고시환율 내 ‘최초’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 하나은행 외환포털에서 취급되지 않는 외화의 경우 : ‘서울외국환중개’의 환율 적용

사. 사업비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정산한다. 다만, 국외 발생 부가세는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다.

## V 수출기업육성 정산지침

### 1 해외영업지원

#### 〈정산 가능 항목〉

- 제품 홍보를 위한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의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료, 부스 설치비(디자인 비용 포함) 및 추가장치비
- 전시회 및 박람회 주최사의 공식 마케팅 서비스(전시회 디렉토리, 카탈로그 기업 안내 게재 등)
- 전기, 수도, 가스, 와이파이라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 〈정산 불가 항목〉

- 교통운임, 현지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보험료,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 판촉요원 등의 인건비
  - \* 교통운임, 체재비, 통역비 등은 다른 지원 항목으로 사용 가능
- 단순 참관 목적의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 참여기업이 직접 부스를 제작하는 경우
- 동일 전시회로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의 사항〉

- 협약연도 내 1일 이상 참여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만 지원
- 참여한 전시회가 해외 진출을 위한 것으로 “운영기관”이 보기 힘들 경우 사업비 거절 및 일부 환수 가능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참가 결과보고서(증빙사진 必) ② 참가확인서(주최사 발급)	①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해외) ② 해외송금확인증 ③ 세부 산출내역서

## 2

## 수출 컨설팅

### 〈정산 가능 항목〉

-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시장조사, 내·외부 환경(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산업분석, 참여기업 경쟁사·제품 분석, 전략 실행방안 도출 등 종합 컨설팅 지원

### 〈정산 불가 항목〉

- “운영기관”이 판단하기에 수출과 관련된 컨설팅으로 보기 힘든 경우

### 〈유의 사항〉

- 컨설팅으로 집행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예) 총 사업비 30백만원(국고+자부담) 중 컨설팅 관련 항목으로 15백만원 초과 집행 불가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컨설팅 결과보고서	①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해외)
② 컨설팅 산출물	② 표준계약서
	③ 이체증 및 카드전표
	④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3

## 홍보/광고

### 〈정산 가능 항목〉

- 참여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영문/현지어 홍보물(브로셔, 제품 매뉴얼, 홍보영상,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제작 비용
  - \* 홈페이지의 경우 개발(제작)지원 포함
- 해외에서 송출 또는 발행되는 TV,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 비용
- SNS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이용 및 라이브 판매 방송 비용 등
-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 등

### 〈정산 불가 항목〉

- 국내용 또는 한국어 잡지·간행물 광고 및 라디오
- 해외 현지 한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국문용 잡지·간행물 광고
- 전단지, 유사 신문, 정식 등록되지 않거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및 잡기 광고 비용

### 〈유의 사항〉

- 홍보가 되는 시기와 종기가 협약연도 내에 있어야 함
- 집행된 금액에 비해 홍보/광고 산출물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산이 거절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홍보/광고 산출물	①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해외) ② 표준계약서 ③ 세부산출내역서 ④ 이체증 및 카드전표 ⑤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4

## 제품 현지화

### 〈정산 가능 항목〉

- 제품의 디자인 및 특성을 현지의 생산 및 소비 여건에 맞춰 개발하는 비용
- 언어, 제품디자인, 기능, 법적/규제 현지화 등

### 〈유의 사항〉

- 결과보고서에 제품 현지화 추진 사유 작성 필요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산출물 보고서	①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해외) ② 세부산출내역서 ③ 이체증 및 카드전표

## 5

## 국제 운송

### 〈정산 가능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위한 운송료

### 〈정산 불가 항목〉

- 국내(내륙) 운송 및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창고료 및 기타부대비용

### 〈유의 사항〉

- 국제 운송은 전체 사업비의 50% 초과 집행 불가
- 선적일이 참여기업의 협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만 정산 가능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결과 보고서	① 지출내역이 담긴 카드명세서, 송금증 ② 물류사 발급 인보이스 ③ 관련 증빙(수출신고필증, 상업 송장(C/I), 보험 가입 증서, 포장 명세서 등)

## 6

# 해외 인허가 취득

### 〈정산 가능 항목〉

- 협약연도 내에 취득한 해외 인허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국내 인허가 취득 지원 불가
- 해외 인증취득 시 소요된 제품 시험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제품 등록비 등

### 〈정산 불가 항목〉

- 현지 공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허가가 아닌 경우
- 해외 진출·확대를 위한 인허가로 보기 힘든 경우

### 〈유의 사항〉

-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인증획득에 실패하였을 경우 성실실패 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할 경우에 성실실패로 인정하며 집행비용의 50%까지 정산 가능하다.
- 협약연도 內 발행(인증서/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된 해외인증 결과물에 대해 지원
- 사업 당해연도에 인증취득에 불가할 경우 최초 협약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협약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중간점검 이후 1개월 이내에 협약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인증기관이 국내 인증을 요구하였을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국내 인증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인증기관이 해당 국내 인증을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인증서 사본	① invoice(기업명, 인증명, 시험항목, 제품명 등 표시)
② 시험성적서	② 송금확인증
③ 심사 결과보고서	③ 견적서

## 7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정산 가능 항목〉

- 해외 법인 및 지사 설립, 해외 법인 및 지사 인사/노무 관리 등 법인 설립과 운영 관련 이슈 대응과 컨설팅 지원
- 해외 진출 및 확대를 위한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지원
- 참여기업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 증자, 차입 등 관련 국내·외 법률 이슈 대응과 문제해결 컨설팅
- 관세, FTA, 무역, 통관절차 등의 문제해결 및 대응 관련 컨설팅

### 〈정산 불가 항목〉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직접 비용(설립비용, 소송비 등)
-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외 정산항목의 경우 실비정산 원칙

### 〈유의 사항〉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종목이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감정평가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가 아닐 경우 정산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종목에 해당되는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서비스에 투입되어야 함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컨설팅 완료보고서	①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해외)
② 결과보고서	② 표준계약서
	③ 세부산출내역서
	④ 이체증 및 카드전표
	⑤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8

## 무역 보험 · 보증

### 〈정산 가능 항목〉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한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 대행
-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단기수출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요약형만 지원
- 해외채권 회수대행의 지원 금액은 해외 채권회수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지원 금액에 포함(한국무역보험공사 가산수수료 지원 불가)

### 〈정산 불가 항목〉

- 타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대행사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유의 사항〉

- 무역보험·보증 대분류 기준 협약연도 누계 지원 최대 1천만원 이내 정산 가능
- 서비스 완료일이 참여기업의 협약연도 내에 포함될 경우만 지원 가능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수출보험증서 ② 환변동보험증서 ③ 수출신용보증서 ④ 대외채권 추심대행 수수료 납부확인증 * 각 무역 보험·보증에 맞는 결과증빙 제출	① 각 서비스별 납부통지서 ② 이체증 및 송금증

## 9

# 등록비/대행비

### 〈정산 가능 항목〉

- 수출 관련 각종 서류 대행
-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등 현지등록 서류 대행
- 현지 입점을 위한 서류준비, 신청 등의 서류 관련 업무 대행
- 수출을 위한 자사의 해외신용등급조회(외국어 보고서) 발급

### 〈정산 불가 항목〉

- 국내용 신용등급조회 및 보고서 발급 비용

### 〈유의 사항〉

- 협약연도 내 완료된 서비스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결과보고서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② 송금증 ③ 세부산출내역서 ④ 표준계약서

## 10

## 통번역

### 〈정산 가능 항목〉

- 수출을 위한 각종 자료(인콰이어리, 계약서류, 제품매뉴얼 등) 번역서비스
-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 외국어↔한국어, 외국어↔외국어 통번역 모두 가능

### 〈정산 불가 항목〉

- 수출과 무관한 통번역 서비스
- 개별 통·번역사 섭외 시 지원 불가(수행기관 미활용)
-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시 현장결제(현금)를 통한 통역 서비스는 정산 불가

### 〈유의 사항〉

- 통·번역사를 활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앱·AI를 활용한 단순 번역의 경우 정산이 불가할 수 있음
- (별첨 2) 통역비 지급수수료 기준 한도 내 정산 가능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번역결과물 ② 결과보고서(사진 必)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② 송금증 ③ 통·번역사 이력서 및 프로필 ④ 용역 계약서

# 11

## 시장조사 지원

### <정산 가능 항목>

- 해외 수출·확대를 위한 각종 출장 등의 항공 및 숙박비
- 시장조사 시 발생하는 필수 부대비용(보험, 비자 등)

### <정산 불가 항목>

- 체재비(일비, 식비) 및 교통비(유류비, 렌트비 등) 지원 불가
- 숙박료 이외 미니바, 인터넷, 세탁, 룸서비스 등 정산 불가

### <유의 사항>

- 항공 및 숙박비는 운영기관 실사 및 시장조사 지원 한도 적용 - [별첨 2]
- 시장조사비 정산은 참여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 명단에 등록된 임직원에게 한함
-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시장조사비 지원 불가
-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시장조사 내용과 출장기간이 “운영기관”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정산이 거절될 수 있음
- 항공은 이코노미석 기준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	① 항공 E-TICKET
② 부대비용 관련 확인 서류	② 숙박 확인증(인원, 숙박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③ 이체증 및 영수증

## 12

## 디자인 개발

### 〈정산 가능 항목〉

- 기업의 제품(상품)의 해외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디자인 비용 지원
- 제품의 수출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을 위한 제품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비용 등

### 〈정산 불가 항목〉

- 한국어가 포함된 카탈로그, 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 〈유의 사항〉

- (별첨 3) 디자인 개발 단가기준 초과 집행 시 정산이 거절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산출물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세부산출내역서 ③ 입금증 또는 송금증

## 13

## 테스트비

### 〈정산 가능 항목〉

- 현지 시운전 등 제품테스트 관리·비용

### 〈정산 불가 항목〉

- 국내에서 수행되는 테스트비 정산 불가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테스트 결과보고서(증빙사진 必)	① invoice ② 송금확인증 ③ 견적서

## 14

## 역량강화 교육

### 〈정산 가능 항목〉

- 무역실무교육(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 외국어 교육 등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교육 지원
-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원

### 〈정산 불가 항목〉

-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 교육 과정 수료증 또는 교육수료확인서 미첨부 시
- 참여기업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교육비
-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 비용
- 교육비 환급 과정의 환급 대상액
- 교육 및 연수 참가를 위해 개별적으로 집행한 항공임, 숙박비 등

### 〈유의 사항〉

- 교육 이수 기간(수강 기간)이 협약연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수료확인서	①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② 교육 수강 이력 화면 캡처본	② 입금증 또는 송금증
③ 결과보고서	③ 교육 안내자료

## VI 해외 개별박람회 정산지침

### 1 해외 개별박람회 지원

#### 〈정산 가능 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 등록비, 주최측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 전시물품 관련 운송통관비(편도 기준, 정식 전시품 통관에 한함)
- 보험료(안전, 상해 등)
  - \* 20만원 이내, 주최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 보험에 한함
- 통역비

#### 〈정산 불가 항목〉

- 전시회 간접비용 :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출력물 제작, 인쇄비(디자인, 그래픽, 브로셔 등)
- 핸드캐리 전시물품 : 개인 수화물, 운송사의 핸드캐리 운송비
- 참가신청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 수수료

#### 〈유의 사항〉

- 통역비는 (별첨 2) 예산산정 기준표 참고
-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종합박람회 단체참가와 중복지원 불가

#### 〈제출 서류〉

결과 증빙	지출 증빙
① 결과보고서 - (개별박람회 운영지침 양식)	① invoice ② 이체증 및 송금확인증 ③ 기타 검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지출 증빙자료

**【별첨 1】 실사 및 시장조사 지원 한도**

**실사 및 시장조사 정산 한도** (한국농어촌공사 여비규정 적용)

(단위 : 미 달러화\$)

직 급	등 급	숙 박 비	항 공 임
특정직 .1급 이하	가	176	ECONOMY (일반석)
	나	137	
	다	106	
	라	81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분	국가 및 도시		비고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등급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앤티가바부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앙골라,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가나, 모로코	
다등급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피지	
	남·북 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유럽주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잠비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세네갈, 스와질란드, 케냐, 탄자니아, 레바논, 르완다, 수단, 말리
라등급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통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남·북 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근무여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여행자 보험 가입 최소 조건>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천재상해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금액	200,0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	5,000	1,400	200,000	10,000

## 【별첨 2】 지급수수료 기준표

### 가. 지역별 지급수수료(상담주선용역, 통역원, 안내원), 전시디자인 설치비

\* KOTRA 해외전시회 지원비목별 단가표 준용

구분	지역	통화	통역원(일)	전시디자인 설치비(sqrm)
유 럽	런던	GBP	165	290
	마드리드	EUR	300	400
	뮌헨	EUR	230	380
	밀라노	EUR	300	396
	바르샤바	EUR	200	275
	베오그라드	EUR	220	250
	부다페스트	EUR	280	260
	부쿠레슈티	EUR	200	250
	브라티슬라바	EUR	200	250
	브뤼셀	EUR	200	336
	빈	EUR	200	250
	소피아	EUR	200	250
	스톡홀름	USD	395	340
	아테네	EUR	200	260
	암스테르담	EUR	220	300
	자그레브	EUR	200	275
	취리히	CHF	400	444
	코펜하겐	USD	390	340
	파리	EUR	220	330
	프라하	EUR	200	260
	프랑크푸르트	EUR	200	380
	함부르크	EUR	210	380
헬싱키	EUR	225	330	
북 미	뉴욕	USD	350	516
	달라스	USD	300	516
	디트로이트	USD	300	516
	로스앤젤레스	USD	500	516
	밴쿠버	CAD	400	480
	시카고	USD	380	516
	실리콘밸리	USD	300	516
	워싱턴	USD	320	516
	토론토	CAD	400	480
중 남 미	과테말라	USD	240	250
	리마	USD	210	198
	멕시코시티	USD	242	300
	보고타	USD	200	198
	부에노스아이레스	USD	227	250
	산토도밍고	USD	200	190
	산티아고	USD	207	250
	상파울루	USD	245	330
	아바나	CAD	200	330
	아순시온	USD	160	165
	키토	USD	250	165
파나마	USD	250	275	

구분	지역	통화	통역 원(알)	전시디자인 설치비(sqm)
아시아 · 대양주	뉴델리	USD	210	253
	다낭	USD	180	216
	다카	USD	100	130
	마닐라	USD	170	170
	멜버른	AUD	300	576
	뭄바이	USD	180	253
	방콕	USD	220	200
	벵갈루루	USD	180	253
	비엔티안	USD	250	120
	수라바야	USD	216	170
	시드니	AUD	300	576
	싱가포르	SGD	300	420
	암다바드	USD	200	253
	양곤	USD	180	150
	오클랜드	USD	250	413
	자카르타	USD	200	170
	첸나이	USD	175	253
	카라치	USD	250	144
	콜롬보	USD	150	170
	콜카타	USD	150	253
쿠알라룸푸르	USD	160	220	
프놈펜	USD	220	120	
하노이	USD	200	216	
호치민	USD	200	216	
일본	나고야	JPY	21,000	39,600
	도쿄	JPY	25,000	39,600
	오사카	JPY	21,000	39,600
	후쿠오카	JPY	21,000	39,600
중국	광저우	CNY	800	1,380
	난징	CNY	700	1,380
	다롄	CNY	600	1,380
	베이징	CNY	800	1,380
	상하이	CNY	800	1,380
	샤먼	CNY	650	1,380
	선양	CNY	732	1,380
	선전	CNY	750	1,380
	시안	CNY	580	1,380
	우한	CNY	650	1,380
	정저우	CNY	650	1,380
	창사	CNY	650	1,380
	청두	CNY	750	1,380
	충칭	CNY	610	1,380
	칭다오	CNY	550	1,380
	타이베이	USD	200	250
	톈진	CNY	750	1,380
	항저우	CNY	650	1,380
홍콩	USD	250	300	

구 분	지 역	통화	통 역 원(일)	전시디자인 설치비(sqm)
중 동 아 프 리 카	다마스쿠스	USD	150	150
	도하	USD	225	400
	두바이	USD	200	430
	리야드	USD	275	450
	무스카트	USD	225	350
	바그다드	USD	250	250
	알제	USD	250	300
	암만	USD	200	230
	이스탄불	USD	250	300
	카사블랑카	USD	250	150
	카이로	USD	200	200
	쿠웨이트	USD	175	200
	테헤란	USD	275	300
	텔아비브	USD	330	330
	트리폴리	USD	150	165
	나이로비	USD	200	250
	다레살람	USD	200	204
	라고스	USD	175	150
	마푸투	USD	250	180
	아디스아바바	USD	150	150
아크라	USD	200	150	
요하네스버그	USD	200	396	
카르툼	USD	200	180	
아비장	USD	200	150	
C I S	노보시비르스크	USD	180	240
	모스크바	USD	250	413
	민스크	USD	200	300
	바쿠	USD	150	170
	블라디보스톡	USD	200	180
	상트페테르부르크	USD	200	413
	알마티	USD	200	375
	울란바토르	USD	120	180
	키예프	USD	198	200
	타슈켄트	USD	100	170

**【별첨 3】 디자인 개발 단가기준**

(2024년 기준)

디자인 분야	지원단가 (VAT 미포함)	제작기준
외국어 카탈로그	600만원 이내	24p(1권)
외국어 포장 디자인	800만원 이내	1set(3종)
BI/CI	A. 500만원 B. 1,500만원	A. 로고제작 B. 로고+어플리케이션10종
수출용 제품디자인	A. 1,500만원 이내 B. 3,000만원 이내	A. 렌더링 B. 렌더링+디자인목업
외국어 홈페이지	A. 700만원 이내 B. 2,000만원 이내	A. 템플릿 활용 가능 B. 관리자페이지 포함
수출용 GUI 개발	GUI개발 500만원 이내	
외국어 상품페이지	100만원 이내	

\* 디자인대가기준 표준품셈 기준 A, B 난이도 단가 참고